

2. 한일협정 정보공개 청구 소송

소 장

원 고 : 별지 목록기재와 같음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봉태, 김준곤, 이춘희, 오충현, 송해익

주소 : 대구 수성구 범어동 33-2(☎053-743-0031)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국, 이원재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3(한국빌딩 7층☎02-538-8864)

피 고 : 외교통상부장관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2. 9. 23.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공개요청목록 기재 각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원고들은 일제강점하 피해자 대표입니다.

 **공증인가법무법인 SAMIL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2. 피고의 거부처분 경위

가. 우리 민족은 20세기 초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점을 당하여 신산의 고통을 당하던 끝에 1945. 8. 15.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이에 이은 냉전에 의해 일제강점기의 피해에 대해 아무런 해결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1965년 비록 한일간에 국교가 재수립되었으나 국교 재수립의 전제가 되는 일제강점기 지배의 법적 성격과 일제강점하의 피해자들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 양국간의 인식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현재까지 과거사 문제가 한일간의 바람직한 미래설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제피해에 대한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탓에 일본의 역사왜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제강점기의 법적 성격에 대해 일본과 명확한 인식의 일치를 보지 못한 탓에 현재 일본과 북한간의 외교교섭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나. 원고들을 위시한 일제강점하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은 자신들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며 이를 기초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은 가해자인 일본 및 일본기업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는바, 이러한 소송에서 가해자들의 항변은 일제강점이 불법이 아니므로 일제시대하 법령에 의해 이루어진 징용징병 등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가 아니며, 나아가 피고가 1965. 6. 22. 소외 일본국과 맺은 협정에 의해 국민들의 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2일 맺은 소위 한일청구권협정 관련문서들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법적 성격에 대해 양국간에 어떤 주장과 협의가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에 대해 양국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02년 9월 5일 위 문서를 관장하는 피고에 대하여 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였던 바, 피고는 2002년 9월 23일자로 문서공개를 거부하는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습니다.

*문서번호 : 아일 22000-5509로 이금주 등 총 100명의 청구인께서 2002년 9월 5일(목) 우리부에 접수시킨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록(1-5차)' 등 총 57건의 문서철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검토한 결과, 동 공개청구대상 문서철 전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제7조 제1항 제2호로 보임)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하는 문서의 공개로 인하여 어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구하기 위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 뿐만 아니라 피고가 맺은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소송을 통하여 찾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이를 초래한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그 문서의 공개조차 거부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원고들은 위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본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갑 제2호증	정보비공개처분서

기타 구두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부분	1통
1. 위 입 장	2통
1. 납 부 서	1통

2002. 10.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	봉	태
	김	준	곤
	이	춘	희
	오	충	현
	송	해	익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진	국
	이	원	재

서울행정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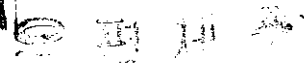
귀중

 **공증인가법무법인 SAMIL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2003. 3. 21



답 변 서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 339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천수 외 99인
 피 고 외교통상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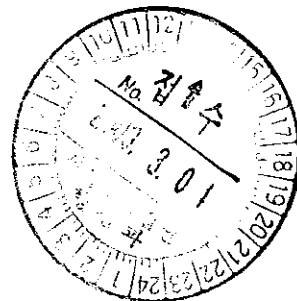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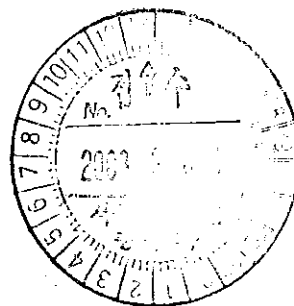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02. 9. 5.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록(1-5차) 등 1952년에
 서 1965년 사이 한일회담 과정에서 작성된 총 57권의 별지 공개요청 목록
 의 문서들(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2. 9. 23.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위 처분에 대하여 2002. 10. 11.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고의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원고들의 정보공개 청구 이유

원고들은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로서 해방 이후 일본 및 일본 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일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한일기본조약이라 한다) 제2조 '1910. 8. 22.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및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양체약국은 양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9. 8.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약한다'는 두 규정을 근거로 일제강점기의 제 조약이 당시에는 합법적이었으나 한일기본조약에 의하여 비로소 무효가 되었고,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하여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 구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위와 같은 해석에 대하여 원고들은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대한민국의 일제강점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며, 한일청구권협약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 대하여 갖는 외교보호권을 소멸시킨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정보의 검토를 통하여 일제강점기의 법적 성격 및 원고들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양국간 어떤 주장과 협의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여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

가. 이 사건 정보의 내용 및 성격(비공개성)

(1) 내용

공개 청구된 이 사건 정보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1965. 6. 22. 체결된 소위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된 1952년에서 1965년 사이 작성된 총 57건의 문서들로서, 검토 결과 원고들이 청구원인에서 공개를 원하는 이유로 밝힌 한일 양국간의 '한일기본조약'·'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위한 관련문서들 외에 한일 국교 정상화에 있어 중요한 '한일어업협정'·'한일문화재협정'·'재일 한국인 지위협정' 체결을 위한 관련문서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정보를 형식적인 면에서 구별해보면, ①한일회담 본회의, 기본관계·청구권 및 법적 지위 위원회 회의록 ② 한일회담을 위한 정치회담 회의록 ③각종 회담을 위한 예비 교섭(절충) 및 교섭자료 ④ 보고서 등 4가지의 형식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각 형식에 따라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①회의록에는 '기본관계', '재산 및 청구권 관계' 및 '어업관계' 등 협정 체결을 위한 한일 양국간 개최된 회의 의사록으로서 한국 및 일본이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표명한 양국의 입장 및 주장들이 적시되어 있고, ②정치회담 회의록에는 주로 어업 및 청구권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교섭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③예비교섭(절충) 및 교섭자료에는 정식 회담 이전에 일본측 담당자들과 접촉, 안건에 대한 상호 입장을 사전에 확인하고 의제 및 절차를 논의하는 내용과 주일 대표부와 본국의 교신서류, 교섭방침 지시 훈령, 회담을 위한 건의서, 각 사안별 협정대책 입안자료 등 고도의 교섭 전략 수립을 위한 각종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고, ④보고서는 각종 회의 및 예비교섭 경과에 대한 전문 등 보고서와 회담 이외의 막후 교섭내용, 일본 외무성 국장과의 면담 내용, 회담과 관련된 일본 정부 입장에 대한 분석 등 추후 교섭 전략 수립을 위한 각종 보고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정보에는 예비교섭 및 교섭자료와 보고서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성격(비공개성)

1945년 해방 후 한일 양국은 양국간 과거청산 및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한일 기본관계·재산 및 청구권·어업 및 평화선·재일 동포의 법적 지위·문화재」 문제 등에 대하여 1952년부터 1965년까지 사안별로 조약 및 협정 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한일회담 본회의」, 「한일회담 정치회담」 과 예비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한일회담 기본관계 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각 회의(회담)과 각 소위원회들은 한일 양국간 국교 정상화를 위한 「조약과 협정의 체결」이라는 양국간 의사합치를 위하여 각 사안들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양국 정부 대표들은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주장 및 논의를 하게 되므로 본질적으로 「합의제」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각 회의에 제출된 자료가 첨부되고 양국 대표들의 발언이 기록된 회의록들과 한국 정부와 주일대표부가 회담 및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내부 검토과정에서 작성된 교섭자료와 보고서들은 일본과의 조약 및 협정체결이라는 의사결정과정 중에 작성된 사항들로서,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단계 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다른 법률¹⁾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최종 결론의 공개만이 가능하고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단계에 있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성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정보 해당 여부(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1) 국민감정이 외교관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한일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시 부적절한 반일 또는 반한 감정이 고조되어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일본에 대하여 과거에 비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피해

1) 법관징계법 제13조 제4항에서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3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조약 및 협정체결도 경제적 이유에 의한 굴욕적 외교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 후 현재까지도 야스쿠니신사 참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동해 표기 문제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갈등을 일으키는 일본의 입장을 강력히 비난하는 등 기본적으로는 일본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국민 정서는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일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대일외교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원고들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는 재산 및 청구권 문제뿐만 아니라 어업 및 평화선, 문화재,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문제 등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의 합의를 위한 양국대표들의 주장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청구권과 어업 및 평화선 분야에서 한일 양국간 심각한 견해 차이가 나타나 합의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었고 그 부분에 대한 협정 체결을 위하여 별도로 개최된 한일 정치권 회담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구권 및 어업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측에서 협상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한국 정부 및 국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 주장들을(그 성격상 구체적인 일본측의 주장내용은 답변서에 적시하지 않습니다) 제기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반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일본측의 주장이 기재된 회의록이나 회담 내용 및 각종 자료들은 조약 및 협정체결을 위한 각종 회담 및 회의의 진행 중 일본 대표들이 자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전술적 주장 및 협상 준비 자료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지배국으로서의 역사에 기인한 일본에 대한 국민 정서의 복잡성·민감성과 각 사안이 갖는 역사성 및 각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으로 인하여, 그 내용들이 공개되는 경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전술적 주장이라는 측면이라는 점은 무시된 채 일본측의 그와 같은 주장 제기 사실 및 그 내용 자체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예견되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조약 및 협정체결 과정상에서 한국 정부가 당시의 경제적·정치적·국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 측에 유리한 교섭전략 수립을 위해 작성된 반일 감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주일 대표부와 본국의 교신서류와 교섭방침, 일본 정부입장 정세분석 보고서 등 일본 국민들에게 반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주장들이 공개되면, 이는 일본에서도 새로운 반한 감정이 촉발되어 67만 재일 한국인은 물론, 한국 기업들에 대한 악영향과 함께 일본 정부의 대한 외교정책에도 예상치 못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경제블록화가 진행되면서 한일간 경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추진되고 있고, 98.11 체결된 신 한일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한일양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북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체제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현시점에서 일본은 우리의 중요한 우방국이자 긴밀한 협력 대상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개최된 각종 회담 및 회의에서 당사국 대표들이 자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전술적 주장 및 준비 자료를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개하여 양국 간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논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양국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된다면, 이는 중요한 협력 대상국인 일본과 우호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신뢰관계가 부당하게 손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산적해있는 위와 같은 한일간의 여러 현안들의 합의가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공조에 틈이 생기는 등 한국의

외교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일본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이 사건 정보의 일방적 공개는 외교적 관례를 깨뜨린 결과가 되어 일본과의 외교적 신뢰를 손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떠한 외교사안의 관련기록들, 특히 이 사건 정보와 같이 양국간의 중요한 조약 및 협정체결 과정에 취득된 정보들은 일방 당사국이 비공개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이를 공개하고자 할 때는 해당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함께 공개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이고 이러한 관례의 일방적 파기는 상대국으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게 되고 그 정보를 공개한 당사국의 외교적 입지가 약화된다고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는 진행중인 일·북한 간 수교교섭(현재는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 핵개발 문제 등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에 직접적·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에도 공개에 신중을 기해 주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존중되어야 할 외교관례를 깨뜨린 결과가 되고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협력파트너로서의 위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일본과의 우호친선관계 및 외교적 신뢰가 손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북일 국교 정상화 노력을 하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

하여 북일관계 정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한일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 및 남·북 분단상황 등으로 인하여 항상 긴장관계에 있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를 위해 남·북한의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정상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북·일 관계의 정상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우리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북 수교교섭은 1991.1월 개시된 이래 각종 사유로 중단되었다가 2002. 9. 코이즈미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2002. 10. 재개되었으나 일시 귀국한 납치생존자 5인의 북한 귀환 거부 및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현재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북 수교는 일본정부의 오랜 외교적 과제로서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북한과의 교섭을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 과정에서 1952-1965 간 이루어진 한·일간 국교정상화 교섭내용을 준용한다는 입장이고,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는 그 내용이 일·북한간 수교교섭에 직접적·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에도 공개에 신중을 기해 주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위와 같은 입장을 무시하고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과거 한일간의 교섭과정에서 체결한 청구권, 문화재, 재일 한국인 지위, 어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일본이 제기한 각종 주장 및 그 논거, 수교에 임하는 기본 입장 등 고

도의 교섭전략들이 사실상 북한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어 일본 정부로서는 향후 북한과의 교섭과정에서 극히 불리한 입장에서 교섭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 정보 공개 후 일본 정부가 실제 북한과의 수교교섭을 진행하면서 공개된 이 사건 정보로 인하여 교섭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우리 정부의 일방적 정보공개 행위로 인하여 일본의 국익이 침해받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일본 정부로서는 우방국이며 협력 파트너인 우리나라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 정부도 일본과의 외교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입지가 약화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됨과 아울러 한일 외교관계가 악화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일본의 정보공개법에 의하여도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입니다.

일본의 정보공개법인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행정문서의 불개시(비공개)정보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외교관계 정보의 비공개 사유를 우리 정보공개법과 달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해칠 염려, 다른 국가 혹은 국제기관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될 염려 또는 다른 국가 혹은 국제기관과의 교섭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²⁾

일본의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외교 관련 정보의 비공개 사유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2호의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2) 강경근, 정보공개제도의 입법 및 사법적 실현(한국법제연구원, 2002) p37. 별첨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원문 및 제5조 제3호 번역문 참조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의 구체적 사유로 인용할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반일감정을 자극하여 우리나라의 대일 외교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염려가 있고, 일본의 경우도 북일 수교 교섭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등 한 일간에 상호 외교적 신뢰를 손상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일본의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주장의 타당성

원고들은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원고들의 입장이 달라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로써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한일 기본조약 및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전 작성된 이 사건 정보의 검토를 통하여 일제강점기의 법적 성격 및 원고들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양국간 어떤 주장과 협의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일청구권 문제에 관하여 한일 양국은 한일청구권 협정서 문안에 한일 양국의 구체적 합의내용에 대하여 모두 적시할 수 없어 부속서로서 한일청구권 협정의 합의의사록(I)³⁾을 추가로 작성(특히,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를 중심으로)하여 협정 내용에 대한 양국간의 구체적 합의내용을 상세히 적시하였고, 위 합의의사록도 협정서와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3) 별첨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관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관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 참조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의 규정만으로 한일양국간 청구권에 대한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원고들로서는 위 협정 제2조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의 구체적 합의내용을 자세히 적시하고 공개된 위 합의의사록에 대한 검토만으로도 한일 양국의 청구권에 관한 합의 내용 및 양국의 입장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약 및 협정 체결 과정 중에 작성된 회의록 및 교섭자료, 보고서 등의 공개청구는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정보에는 원고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인 '한일 청구권' 관련 문서 뿐 아니라 '어업 및 평화선',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화재' 등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하여 협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들에 대한 회담 및 회의 및 협상자료, 보고서 등 관련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관련성이 없는 부분들까지 무제한적으로 공개를 요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한 공개 이익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로서의 양국 역사로 인하여 국민정서가 큰 영향을 미치는 한·일 양국관계의 민감성·특수성에 기인한 한일관계의 훼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신뢰 손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북한간 수교교섭에 미칠 부적절한 영향 등이 우려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외교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고의 비공개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 고 자 료

1. 을 제1호증 일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원문 및 동법 제5조 제3호 번역문 각*1부
1. 을 제2호증의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1. 을 제2호증의 2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관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 을 제2호증의 3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관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

2003년 2월 28일

피고 소송수행자

외교통상부 외무관 안민식

외무관 이상렬

외무관 신희선



준 비 서 면

사 건 : 2002 구합 339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 신천수 외 99

피 고 : 외교통상부 장관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본건 소송의 의미

원고들은 일제강점하 피해자들의 대표로서, 현재 가해자인 일본국과 일본기업을 상대로 노동에 따른 임금의 지불과 강제연행 및 이에 이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중이거나 제기하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일본국> 및 <일본기업>들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역시 일제강점이 합법임을 전제로 법령에 의한 적법한 행위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울러 원고들의 청구권은 1965. 6. 22. 한국정부와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본정부 및 기업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들은 일본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원고들의 청구권을 소멸시킨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권리가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가지는 외교적 보호권만이 소멸되었는지 문면상으로 명백치 아니하여 해석상의 다툼이 계속되어 왔고, 따라서 이러한 해석상의 다툼을 명백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약과 협정 체결에 이르는 경위를 반드시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미쓰비시중공업 피징용자 손해배상 소송(2000 가합 7960호 사건)에서 담당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판단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2003. 3. 26. 자로 피고 외교통상부측에 본건 관련문서에 대해 문서송부촉탁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마저 무시하고 문서송부를 거부하고 있는 바입니다.(갑제3호증 문서송부촉탁서, 갑제4호증 문서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참조)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가를 불명확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권리침해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정당성이 없는 이유를 들어 문서의 공개조차 거부하여 법적 불명확상태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귀원에 제출한 2003. 3. 4. 자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들고 있으며 구체적인 논거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 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시 부적절한 반일 또는 반한 감정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 나. 일본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이 사건 정보의 일방적 공개는 외교적 관례를 깨어 외교적 신뢰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는 점
- 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북일국교 정상화 노력을 하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북일관계 정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한일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
- 라. 일본의 정보공개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비공개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네가지 근거는 모두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사실인정과 가치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우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를 곡해한 것이며,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가 가지는 헌법규범 침해 및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나온 논리라 아니할 수 없는 바, 이하 피고 주장의 부당성을 차례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일본의 정보공개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비공개라는 점과 관련하여

먼저 위 사유는 외국의 정보공개법이 공개를 금지하는 정보라는 조항이 없는 우리 법조문상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아울러 위 논리는 일본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만약 금지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우리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배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일조약의 비준국회에서 일본정부는 청구권문제에 대해 어디까지나 청구권과 무관한 경제협력의 문제로 해석을 하고, 한국병합조약에 대해 현재는 무효이나 당시는 유효하고 합법적이었다고 주장”(이원덕, 한일과거사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년, 303쪽) 하였습니다.

결국 일본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경제협력자금과 일제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배상요구와 법적 인과관계가 없음이 판명되게 되어, 결국 일제 강점하 한국인 피해자들의 배상에 대한 요구를 거절한 일본측의 주장이 논리적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당시 한일조약과 국내법의 해설에 대해 일본 외무성과 국무성의 책임자들이 작성한 ‘시의 법령’에 의하면, 청구권문제와 경제협력과의 관계에 대하여 “경제협력의 증진과 청구권문제의 해결은 동일한 협정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양자가 함께 경제에 관한 것이고, 전술한 교섭의 경위로부터 관련지워지는 것에 불과하고, 양자간에 어떠한 법률적인 상호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의 공여는 한국의 대일청구에 대한 채무지불의 성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배상과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측의 국내법적인 설명은 청구권문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일한회담의 최대 교섭안건으로서 늘 주목되어 왔고, 특히 한국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30여년에 걸치는 일본의 조선 식민지의 보상으로서 의미를 관련지어 왔다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내적 정치고려와는 별개로 명문화된 협정의 내용으로부터 말하면 제1조에 규정하는 5억달러의 자금공여는 한국측이 말하는 바와 같은 한국의 대일청구에 대한 채무지불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는 바, 협정 전문의 제2단 및 제1조1 끝단의 규정에 의해 명확하듯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으로서 행해진 것에 다름 아니다” (대장성인쇄국, 일한 조약과 국내법의 해설, 1966년, 62-63쪽)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더라도 <경제협력>과 <청구권>과는 법률적 관계가 없었음이 입증될 형편에 처해집니다.

특히 일본에서 거주하는 재일동포의 경우에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2항 a호 따라 제2조 1항의 형식논리에 의하더라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제외가 됨에도 일본의 전후 보상 입법례에서 일본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재일동포를 차별해 온 일본의 전후 원호정책의 부도덕성이 그대로 들어 나기 때문에 일본정부로서는 비공개로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도 없이 단순히 일본에서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니 우리도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그 배경이 되는 사실에 대한 오인과 일제강점하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전쟁책임을 방기하려는 일본측의 의도를 한국정부가 그대로 옹호하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초래됨에도 그 차이를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이 사건 정보의 공개시 부적절한 반일 또는 반한 감정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 공개의 거부 사유로 부적절한 반일 감정 및 반한 감정이 고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유리한 협정 체결을 위해 세워진 전략, 전술적 주장들이 서로 양국간에 반대 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주장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극히 낮게 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반일감정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주장에 불과하고, 그 속셈은 앞서 본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들의 배상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피고의 잘못이 들어나는 것을 두려워 할 뿐이지 그 이외

에 새삼스럽게 한국내에서 반일감정이 고조될 여지는 없습니다. 적어도 국내에서 일본에 대해 더 이상 고조될 잘못된 반일감정이란 없습니다.

현재 한일간에 종종 등장하는 반일감정의 근본은 가해자인 일본이 침략전쟁과 이에 따른 한국민의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부적절한 반일, 반한 감정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 사건 정보의 부도덕성만을 스스로 시인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야말로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또 다른 씨앗이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문제는 덮어놓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처는 치유하지 않고 숨기려 하면 더욱 악화하는 것입니다. 문제된 부분은 공개를 하고 이를 기초로 그에 맞는 처방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5. 일본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이 사건 정보의 일방적 공개는 외교적 관례를 깨어 외교적 신뢰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일본이 비공개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개하면 외교적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고, 일본정부가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으로 일본측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2002. 9. 17. 자 북한과 일본간의 평양선언에 따라 일본측의 주장하는 바 북한에 있는 피납자 수명이 일본에 송환되었습니다. 북한측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측의 재송환약속을 믿고 일시송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일본측은 자신의 국민인 피해자들이 일본측에 돌아오자마자, 북한당국과의 외교적 약속을 깨고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어 그후 수교교섭에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측의 이러한 태도는 철저한 자국민 보호가 일본 외교의 기본원칙이며,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는 외국정부와의 약속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외교의 기본이라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약 750만명이 넘는 강제연행(일종의 납치) 피해자들의 문제에 있어 일본측과의 외교적 관례 운운하며 이의 공개조차 거부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 정부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과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는 것인지 일본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6.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북일 국교 정상화 노력을 하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북일 관계 정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한일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설명을 떠나 참으로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하의 피해는 민족문제로 남북한 정권의 문제를 떠나 민족적 차원에서 공조할 문제입니다. 가사 진실의 공개에 의해 일본측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점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일본 정부가 수인하여야 할 사항이지,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가 공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북일간의 교섭에서도 일본측은 일제강점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경제난에 빠진 북한측을 압박하며 그들의 요구대로 교섭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만약 일본측의 북한측의 궁박사정을 이용하여 현저히 공정에 반하는 협정을 강요하였을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보아 결코 일본측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려 냉전하에 일방적으로 맺어진 굴욕적 한일협정을 지금이라도 함께 개정하여 과거사를 국제기준과 상식에 맞게 처리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신뢰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7. 헌법위반의 점 -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미공개가 가지는 <헌법 규범침해> 및 <기본권 침해>의 결과를 전혀 인식치 못하고 있습니다.

(1) 우리 헌법은 전문에 우리 정부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부임을 명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측은 한일합방조약이 당시에는 유효하고 합법적이어서 결국 일제강점기가 합법적이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일본제국의 한반도에 대한 법적 지배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측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물론 1948.8.15. 설립된 우리 정부조차 합법적 정부로써 인정치 아니하고 있고, 이것이 과거 교섭과정에서 소위 '구보다 망언'에 의해 표출된 바가 있고, 현재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한일합방조약이 애초부터 완전히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가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관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외교통상부가 일본측이 잘못된 주장을 밝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다면 일본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우리 헌법 전문의 규범성을 침해하는데 동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아울러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는 묵시적으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원고의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피고측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

권의 수용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하 일본군으로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은 '소외 김성수'의 경우 한일청구권협정 전에 일본국으로 귀화를 하였더라면 현재까지 약 15억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가 1965년 일본정부와 청구권협정을 맺은 후에는 귀화를 하여도 소외인의 보상에 대한 권리는 위 협정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원고들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원고들의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및 일본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적어도 위 청구권협정에 의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문서의 공개에 의해 원고들이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는데 협조해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질서하에 당연히 피고에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법치주의하에서 원고들의 권리는 법과 재판에 의해 보장될 수 밖에 없는 바, 법적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법적 상태의 불명확이란 원고들에게는 법치주의하에서 또 다른 가해행위에 다른 아님에도 피고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가해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8. 결론

한국과 일본사이에 일본제국주의의 강점이라는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한일간에 일제강점기의 법적 성격과 배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일치를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쪽에서는 불법과 배상을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합법과 면책을 주장하여서는 백년이 지나도 불행한 과거는 청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에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

하지 않은 채 맺어졌기에 아직도 한일간에는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고 한반도 전체에 대한 바람직한 과거청산을 통해 진정한 한일간의 우호관계가 복원되기를 기원합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강제3호증 | 문서송부촉탁서 |
| 1. 강제4호증 |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 |

2003. 5. 6.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국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 귀 중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변론

준 비 서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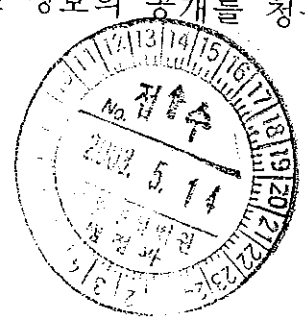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 339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천수 외 99인
 피 고 외교통상부장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보공개청구자의 이익

원고들은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들로서 해방 이후 일본 및 일본 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원고들의 입장이 달라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로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한일 기본조약 및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전 작성된 이 사건 정보의 검토를 통하여 일제강점기의 법적 성격 및 원고들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양국간 어떤 주장과 협의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고 주장합니다.



2. 협정에 따른 대일민간인청구권 보상 절차의 종료

일제 강점기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대일 민간인 청구권(원고들은 그 청구권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여 알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대일민간인청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은 1951.9.8 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되고 1952.4.28 효력을 발생한 연합국과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21조, 제4조 및 이에 의거, 1965.6.22 한일양국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제1조, 제2조, 이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제2조에 따라 동 협정 제2조제2항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원고들의 청구권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협정의 적용을 받아 일괄 타결된 대일민간청구권에 포함 된다고 보여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을제3호증).1)

대한민국정부는 일제 강점기 한국 민간인 피해자들의 대일청구권 보상을 위하여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들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일제 강점기 피해 한국인들의 청구권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즉, 우리 정부가 제정한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1966.2.19.

1) 이하 대일 민간인 청구권에 대한 부분은 헌재 1996.10.31 결정 94헌마 204(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에서 자세히 실시되어 있습니다.

<사건개요>

청구소송인이 1942년경 만주국 열하성 승덕에 소재하는 일본국 소유 주식회사 만주광산 승덕 출장소 직원으로 입사, 3년간 종사하다가 해방직전에 동 출장소장의 피난명령을 받고 동 출장소를 출발하여 1945.8.21 만주 안동에 도착한 후 해방이 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같은날 자신이 모았던 일본국 화폐 합계금 17,9000원(圓)을 고향으로 송금하고 동일자 같은 은행발행의 '통상위체증서'를 받았으나 그 이튿날 신의주에 도착한 후 상기 은행에 갔으나 이 은행이 폐쇄되어 찾지 못하고 일본국의 보상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 한일국교가 정상화되어 이에 따라 대일민간인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었으나 그 대상은 1945.8.15 이전의 대일민간인청구권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대일민간인청구권에 대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사건

법률 제1741호, 이하 “청구권자금법”이라 한다)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또는 도입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여 제정되었고 동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 8. 15.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 중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을제4호증).

위 법률에 근거하여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1971. 1. 19. 법률 제2287호, 이하 “청구권신고법”이라 한다),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1974.12.21 법률 제2685호, 이하 “청구권보상법”이라 한다)에서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기준·종류·한도 등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을제5호증 및 을제6호증).

특히 청구권자금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 8. 15.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만을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그후 제정된 청구권신고법 제2조는 이 범위를 넘어 일정한 경우(같은 조 제1항 제1, 5, 7호의 경우) 그 취득시기가 1945.8.15 전이건 후이건 불문하고 신고의 대상으로 하는 등 우리 정부는 일제 강점기 민간인 피해자들이 최대한 보상을 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위 청구권자금법, 청구권신고법 및 청구권보상법에 따라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대일 민간인청구권을 보상해준 후 1982.12.31 법률 제 3613호(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 법률 제3614호(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폐지법률) 및 법률 제3615호(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로 모두 폐지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일본을 대신하여 대일민간인청구권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을제4호증 내지 6호증).

3.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 이익과 정보공개로 인한 역기능의 비교형량

일반적으로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의 일본국 및 민간기업인에 대한 청구권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을 받아 일괄 타결된 대일민간청구권에 포함된다고 보여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고, 청구권에 대한 국가 보상은 청구권자금법, 청구권신고법 및 청구권보상법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 위 법률들이 1982. 12. 31. 폐지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정보공개를 통하여 얻으려는 이익인 '일제 강점기 징용에 따른 피해 보상'은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여 공개로 인한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2003. 2. 28. 답변서에서 자세히 설시 하였듯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인정할 경우 ① 국민감정이 외교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한일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시 부적절한 반일 감정이 고조되어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② 일본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이 사건 정보의 일방적 공개는 외교적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가 되어 일본과의 외교적 신뢰를 손상할 우려가 있으며, ③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북일 국교 정상화 노력을 하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북일관계 정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한일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자의 이익과 정보공개로 인한 외교관계의 해악 가능성을 비교형량 할 때 정보공개로 인한 악영향이 훨씬 크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 사건 정보는 공개시 외교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후 대일 민간청구권에 대한 보상 입법을 통하여 일본국을 대신하여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종료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보상 입법에 규정된 보상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에 기초하여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전의 협상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정보공개에 청구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비공개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증거자료

1. 을제3호증 헌 1996. 10. 31. 94 헌마 204(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문 1부
1. 을제4호증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1966.2.19 법률 제1741호) 및 동 폐지법률(1982.12.31 법률 제 3613호)
1. 을제5호증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1971.1.19 법률 제2287호) 및 동 폐지법률 (법률 제3614호)
1. 을제6호증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1974.12.21 법률 제2685호) 및 동 폐지법률(법률 제3615호)

2003년 5월 14일

피고 소송수행자 외무관 안민식

외무관 신희선

외무관 이상렬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 귀중

준비서면

사 건 : 2002 구합 339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 신천수 외 99

피 고 : 외교통상부 장관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귀원에 2003. 5. 14.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들이 정보공개를 통해 얻으려는 이익은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여, 공개로 인한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마치 원고들이 가지는 청구권이 이미 모두 소멸된 것 인양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1)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2) 피고의 그 동안의 주장에도 모순되는 것이고, (3) 무엇보다도 현재 일본과 한국에서 가해자인 일본정부 및 일본기업에 대해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충격을 안겨 줄 주장으로 심히 부당합니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본건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개로 인한 이익자체가 없다고 하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1) 국민주권주의를 취하고 있고, 국민과 국가가 별개의 법인격임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헌법 제23조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한편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으로서는 동산, 부동산에 대한 물권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공법상의 권리는 물론,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대가로서의 성격과 자신 또는 가족의 특별한 희생에 의해 얻어진 보상적 성질이 강한 경우에도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원고들은 일본정부 뿐 만 아니라,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데, 원고들이 자신의 노무를 이행한 일본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임금 등의 지불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임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민법상 채권의 소멸사유로는 '변제, 공탁, 면제' 등 법정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만이 그 소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채무자인 일본정부나 일본기업으로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 등을 일체 받은 바가 없고, 이에 대해 면제를 해 준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2) 그런데도 피고는 마치 피고가 일본국으로 받은 경제협력자금의 일부를 가지고 만든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청구권자금법),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이하 청구권신고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이하 청구권보상법) 등의 법률의 제정과 실행 등에 의해 원고들의 재산권이 소멸된 것인 양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률들은 피고가 자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으로써 인해 자국민의 권리구제가 현저히 어려워 질 것을 고려하여, 그 대상적 조치로 광범위한 재량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지 위 법률에 의해 원고들이 가진 재산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헌법에 의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헌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권의 제한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법률의 형식에 의하되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원고들의 재산권에 대해 우리 정부가 수용 내지 제한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법률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본건 원고들의 재산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한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3) 가사 위 세 가지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의해 마치 원고들의 재산권을 수용한 것인 양 주장을 한다면, 위 법률들은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 법률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마치 '청구권신고법'과 '청구권보상법'을 만들어 마치 원고들에게도 보상을 한 것인 양 주장을 하나, 원고들이 채무자인 일본정부나 일본기업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청구권은 위 청구권신고법의 신고대상에 조차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하여 일본 정부의 채무에 대해 대위 변제를 한 것인 양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원고들에 대한 채무자는 일본정부만이 아니고 원고들이 일한 일본의 기업들도 상당수 있는데, 어떻게 일본기업에 대한 채무를 우리 정부가 대위 변제하였다는 것인지 납득을 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원고들은 채무자인 일본정부나 일본기업은 커녕 그 대위변제자로 주장을 하는 우리 정부로부터 지금껏 아무런 변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인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에 대한 원고들의 권리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하며, 나아가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에 대한 원고들의 권리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3. 피고의 주장은 우리 정부의 이전의 입장과도 모순되는 것입니다.

(1) 먼저 <1991. 7. 10.> 국회에서 당시 이상옥 외무장관은 “정부레벨에서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에 체결된,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을 통해 이 문제가 일단락 되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995. 9. 20> 국회 통일외무위원회에서 당시 공노명 외무장관은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체결로 일단 일본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의 금전적 보상은 일단락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라고 하면서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다시 말해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한편, “개인적인 請求權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997. 11. 6.>에도 국회에서 피고는 “정부는 도덕적 우위의 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정부차원의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우리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로부터 개별적인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996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을 일본측이 성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해오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2) 또한 <1999. 8. 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피해자 개개인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개별적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 10. 9.> 김원웅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바처럼 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고 보는지? 만약 정부가 배상이 끝났다고 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국가 간의 배상이 끝났다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배상까지 끝났다고 보는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서면 질의한 데 대하여, <2000. 10. 25.> 당시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은 서면답변서를 통해, “한 일 양국 정부는 피징병 징용자의 배상 등 양국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정부간에 청구권문제를 일단락 지은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청구권협정]이 개인의 청구권 소송 등 재판을 제기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라고 재확인했던 바 있습니다.(갑제5호증 답변서 참조)

(3) 또한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중인 변호인단 앞으로 보낸 <2001. 7. 19.> 자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 양성철의 답신에 의하면 “군대위안부 문제는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국가 범죄로서 일본의 국가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당시 군대위안부문제가 상정되거나 논의된 바 없으나, 우리 정부는 1993년 일본정부에 대하여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철저한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는 방침을 천명하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피해자개개인의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이 피고는 계속하여 한일청구권 협정이 개인의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전의 주장에 반하여 왜 이제 와서 모순된 주장을 본 법정에서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바, 이는 오로지 청구권협정문서의 공개만을 거부하기 위해 무리한 법률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4. 피고 주장으로 인한 관련 소송에서의 영향

결국 피고의 2003. 5. 14.자 답변은 원고들의 권리소멸에 대해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종래의 피고의 입장과 모순되는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일본에서 진행되는 동종의 소송에도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결국 정보공개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들의 청구권이 한국정부에 의해 해결이 되도록 한일 청구권협정 교섭당시에 한일 양국정부간에 협의되었다면 그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측이 어느 정도의 금원을 이행 제공하였는지, 이러한 양국정부에 의한 처리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채무자인 일본정부와 기업들에 대해 개별적인 권리구제절차를 취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기로 한 것인지 본건 문서의 공개에 의해 그 진상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의 거듭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소멸주장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 본건 문서의 공개를 요청하는 원고들에게 권리구제에 협조하기는 커녕, 문서공개를 거부하기 위해 소멸된 권리 운운하는 피고의 주장은 법률상으로는 물론 도의적이나 신의칙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5. 원고들이 참여하고 있는 재판의 진행 현황

현재 소위 '전후보상소송'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일본정부 및 일본기업 등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각 재판의 진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원고별 재판의 참가현황은 별지목록과 같습니다.)

○ 워싱턴D.C 위안부재판

- 재판소 : 워싱턴 D.C 연방지법
- 제소년월일 : 2000년 9월 18일
- 피고 : 일본국
- 원고 : 한국인 피해자 6명, 중국인 피해자 4명, 대만인 피해자 4명, 필리핀인 피해자 1명 (집단소송)
- 1심판결 : 2001년 10월 4일, 기각
-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중
- 정보공개소송원고중 참여자
 - 김분선(1923.11.11), 황금주(1927.12.01)

○ 나고야 미쯔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 재판소 : 나고야지방재판소
- 제소년월일 : 1999년 3월 1일
- 피고 : 일본국, 미쯔비시중공업
- 원고 : 박해옥외 3명
- 현재 1심재판 진행중
- 정보공개소송원고중 참여자
 - 김혜옥(1932.03.06), 양금덕(1931.02.28)

○ 도야마 후지코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2차)

- 재판소 : 도야마지방재판소
- 제소년월일 : 2003년 4월 1일
- 피고 : 주식회사 후지코시
- 원고 : 23명
- 정보공개소송원고중 참여자
 - 나화자(1931.10.01), 김정주(1931.08.02), 성순님(1930.05.15), 박소득(1932.01.15)

따라서 향후 북일 간의 수교과정에서 한일기본조약의 위 조항의 수정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일기본조약에 수정 혹은 폐기조항이 없는 관계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한 향후 남북이 통일된 후 성립될 정부와 현재의 한일협정 혹은 진행 중인 북일협정과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바입니다.

한편 지난 평양에서 발표된 <북일평양선언>에 의하면 한일기본조약과 상충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한일기본조약에는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일체의 문언이 있지 아니하나, 위 선언에는 “일본측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조선인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과의 뜻을 표명한다”고 하여 일본측 학자로부터 이는 한일기본조약의 입장을 사실상 망기하였다고 지적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한일협정과의 불일치를 어떻게 통일해야 할 것인지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바입니다.

아울러 한일협정당시의 교섭의 근거로 흔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그 국제규범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위 강화조약의 서명국도 아닌데다가 북측 역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질서 내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북일간 교섭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도 아울러 문제이고, 카이로선언이나 포츠담선언을 그 근거로 할 수 있는지도 향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현재 한일협정에는 한국정부의 관할권 및 지위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이미 무효조항과 관련

한편 한일협정 체결시는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북일간 국교교섭에서 가장 양 당사자간 대립이 되고 있는 것이 <일제강점기의 역사인식> 부분입니다.

○ 우끼시마마루 소송

- 재판소 : 교토지방법재판소
- 제소년월일 : 1992년 8월 25일
- 피고 : 일본국
- 원고 : 진승렬외
- 1심판결 : 2001년 8월 23일, 원고 일부승소
- 2심판결 : 2003년 5월 30일, 오사카 고등재판소, 기각
- 현재 최고재판소 항소중
- 정보공개소송원고중 참여자
 - 진승렬(1942.04.28), 문병식(1942.06.20), 김동천(1922.06.04), 서준호(1944.01.07), 박장수(1944.02.06), 박진주(1949.08.15), 김두진(1939.04.01)

○ 미쯔비시히로시마징용공재판

- 재판소 : 히로시마지방법재판소 / 부산지방법원
- 제소년월일 : 1995년 12월 11일 / 2000년 5월 1일
- 피고 : 일본국, 주식회사 미쯔비시중공업 / 주식회사 미쯔비시중공업
- 원고 : 박창환외 45명 / 정창희외 5명
- 1심판결 : 1999년 3월 25일 / 현재 1심재판 진행중
- 현재 히로시마고등재판소 항소중
- 정보공개소송원고중 참여자
 - 정창희(1923.09.19), 정상화(1923.10.25), 김돈영(1923.09.25), 박창환(1923.01.05), 이근목(1926.02.28), 이병목(1923.08.24)

○ 일본제철 오사카재판

- 재판소 : 오사카지방법재판소
- 제소년월일 : 1997년 12월 24일
- 피고 : 일본국, 신일본제철주식회사
- 원고 : 신천수외 1명
- 1심판결 : 2001년 3월 27일
- 2심판결 : 오사카고등재판소, 2002년 11월 19일
- 현재 최고재판소 항소중
- 정보공개소송원고중 참여자
 - 신천수(1926.11.21), 여운택(1923.06.08)

○ 일본제철 가마이시재판 / 공탁금반환청구 소송

- 재판소 : 동경지방법재판소 / 동경지방법재판소
- 제소년월일 : 1995년 9월 22일 / 2000년 4월 27일
- 피고 : 일본국, 신일본제철주식회사 / 일본국, 모리오카지방법무국공탁관
- 원고 : 이상구외 10명 / 이상구외 3명
- 화해 : 1997년 9월 18일로 회사와의 재판은 종결 /
- 현재 일본정부상대 소송 지속 / 진행중
- 정보공개소송원고중 참여자
 - 이상구(1944.09.28)

○ 광주BC급 소송

- 재판소 : 동경지방법재판소
- 제소년월일 : 1995년 5월 10일
- 피고 : 일본국
- 원고 : 이의도와 4명
- 1심판결 : 1999년 3월 24일, 기각
- 2심판결 : 동경고등재판소 2000년 5월 25일, 기각
- 현재 최고재판소 항소중
- 정보공개소송원고중 참여자
 - 이의도(1920.10.20)

○ 관부재판

- 재판소 : 야마구치지방법재판소 시모노세키지부
- 제소년월일 : 1992년 12월 25일
- 피고 : 일본국
- 원고 : 이순덕외 9명
- 1심판결 : 1998년 4월 27일, 원고 일부승소
- 2심판결 : 2001년 3월 29일, 기각
- 최고재판결 : 2003년 3월 25일, 기각
- 정보공개소송원고중 참여자
 - 이순덕(1918.10.20)

○ 재한군인군속재판

- 재판소 : 동경지방법재판소
- 제소년월일 : 2001년 6월 29일
- 피고 : 일본국
- 원고 : 나철웅외 251명
- 현재 1심재판 진행중
- 정보공개소송원고중 참여자
 - 임서운(1942.02.28), 나철웅(1940.05.19), 오행석(1919-02-15), 김기호(1942-05-18), 최순주(1951-06-29), 김문영(1942-04-08), 곽종석(1922.05.12), 오시남(1926.03.03), 한형복(1924.12.18), 전병설(1925.06.21), 최용수(1924.07.14), 장근영(1919.06.27), 김행진(1922.06.08), 조무연(1940.07.18), 윤옥중(1940.07.12)

○ 재한군인군속 2차재판

- 재판소 : 동경지방법재판소
- 제소년월일 : 2003년 6월 12일
- 피고 : 일본국
- 원고 : 이병주외 163명
- 정보공개소송원고중 참여자
 - 이병주(1925.03.20), 이희백(1925.09.05)

○ 유골인도청구소송

- 재판소 : 서울지방법원
- 제소년월일 : 2000년 11월 28일
- 피고 : 대한민국
- 원고 : 송건태외 4명
- 판결 : 2002년 6월 5일, 기각
- 현재 항소포기
- 정보공개소송원고중 참여자
 - 박매자(1943.02.21), 조영순(1943.02.05), 송건태(1930.06.13)

○ 광주천인소송

- 재판소 : 동경지방법재판소
- 제소년월일 : 1993년 6월 30일
- 피고 : 일본국
- 원고 : 이금주외 188명

- 1심판결 : 1998년 12월 21일, 기각
- 2심판결 : 동경고등재판소 1999년 12월 21일 기각
- 현재 최고재 항소중
- 정보공개소송원고중 참여자
 - 이금주(1920.12.09), 노정희(1942.12.05), 오병익(1935.09.19), 오병권(1920.##.##), 정화근(1927.09.17), 노동호(1927.07.14)

첨부서류

1. 강제5호증의 1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통지
1. 강제5호증의 2 답변서

2003. 6. 19.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국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 귀중

별지: 원고들이 참여하고 있는 재판의 현황

부록	의견	재판의의	인정	판결	판례	판례	판례
----	----	------	----	----	----	----	----

분류	원고명	생년월일	일본에 참여하고 있는 재판명	비고
원자폭탄 피해자(10)	이호경	1940.12.27		
	김분순	1928.03.20		
	이뢰자	1940.07.13		
	이기환	1930.01.20		
	김철수	1933.03.02		
	박 남	1938.07.17		
	김성용	1928.01.18		
	김종태	1930.03.09		
	정재만	1936.09.25		
	이상희	1939.11.20		
미쓰비시 중공업피해자 (10)	정창희	1923.09.19	미쓰비시히로시마징용공재판원고 부산 미쓰비시중공재판 원고	
	정상화	1923.10.25	미쓰비시히로시마징용공재판원고 부산 미쓰비시중공재판 원고	
	김돈영	1923.09.25	부산 미쓰비시중공재판 원고	
	박창환	1923.01.05	미쓰비시히로시마징용공재판원고 부산 미쓰비시중공재판 원고	
	이근목	1926.02.28	미쓰비시히로시마징용공재판원고 부산 미쓰비시중공재판 원고	
	이병목	1923.08.24	미쓰비시히로시마징용공재판원고 부산 미쓰비시중공재판 원고	
	이남오	1922.05.25		
	이철용	1923.07.10		
	고득환	1945.01.01		
	박민자	1944.01.26		
일본제철 피해자(10)	산천수	1926.11.21	일본제철 오사카재판 원고	
	여운택	1923.06.08	일본제철 오사카재판 원고	
	이상구	1944.09.28	일본제철 가마이시재판 원고	
	김익배	19##.##.##		
	신배식	19##.##.##		
	조남훈	19##.##.##		
	이이재	19##.##.##		
	한두희	19##.##.##		
	김규수	19##.##.##		
	김용채	19##.##.##		

분류	원고명	생년월일	일본에 참여하고 있는 재판명	비고
B.C급 전범 피해자(7)	이의도	1920.10.20	광주 BC급 소송 원고	
	나철웅	1940.05.19	재한군인군속재판 원고	
	오행석	1919-02-15	재한군인군속재판 원고	
	김기호	1942-05-18	재한군인군속재판 원고	
	박중연	1921-01-22		
	최순주	1951-06-29	재한군인군속재판 원고	
	김문영	1942-04-08	재한군인군속재판 원고	
유골소송(3)	박매자	1943.02.21	재한군인군속재판 원고 유골인도청구소송 원고	
	조영순	1943.02.05	재한군인군속재판 원고 유골인도청구소송 원고	
	송건태	1930.06.13	재한군인군속재판 원고 유골인도청구소송 원고	
노무동원 피해자(10)	윤경석	1923.03.21		
	김동길	1922.09.01		
	지호준	1928.01.29		
	박관동	1920.08.15		
	김성곤	1925.01.10		
	박진부	1940.08.10		
	이금수	1945.10.03		
	최낙훈	1940.05.27		
	임옥순	1930.03.01		
	최을순	1935.12.05		
군인동원 피해자(10)	곽종석	1922.05.12	재한군인군속재판 원고	
	오시남	1926.03.03	재한군인군속재판 원고	
	한형복	1924.12.18	재한군인군속재판 원고	
	전병설	1925.06.21	재한군인군속재판 원고	
	최용수	1924.07.14	재한군인군속재판 원고	
	장근영	1919.06.27	재한군인군속재판 원고	
	김행진	1922.06.08	재한군인군속재판 원고	
	이병주	1925.03.20	재한군인군속 2차재판 원고	
	이희백	1925.09.05	재한군인군속 2차재판 원고	
	조무연	1940.07.18	재한군인군속재판 원고	

분류	원고명	생년월일	일본에 참여하고 있는 재판명	비고
군속동원 피해자	이금주	1920.12.09	광주 천인소송 원고	
	노정희	1942.12.05	광주 천인소송 원고	
	오병익	1935.09.19	광주 천인소송 원고	
	오병권	1920.##.##	광주 천인소송 원고	
	정화근	1927.09.17	광주 천인소송 원고	
	노동호	1927.07.14	광주 천인소송 원고	
	윤옥중	1940.07.12	제한군인군속재판 원고	

法律法人 太平洋

Bae, Kim & Lee

준비서면

사 건 2002구합339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천수 외 99
피 고 외교통상부장관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들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청구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에 대하여 당해 정보를 적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적정한 목적과 방법을 갖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구인들의 주장하는 목적과 방법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통해서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으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의 흠결로 인하여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신의 정보공개청구가 일본 정부에 대하여(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우리 정부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에 원고들

법률법인 태평법

Bae, Kim & Lee

상대방 국가도 위 정보를 공개한 국가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개함으로써 위 국가를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교관계 및 국제법상의 관계는 한 국가 내에서의 법률관계와는 달리 그 특유의 논리와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다른 정보와 동일한 잣대로써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국익은 평가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3) 다른 국가의 예를 살펴보면, 정보공개에 관한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외교관계에 관한 문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국방 또는 외교정책상 비밀로 지정된 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김중양, 정보공개법, 제208편). 이에 따라 실제 미국 정부는 1995. 10. 14. "비밀문서의 공개에 관한 대통령령"(Executive Order 12958)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에 관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외교에 관한 문서는 대통령의 지정만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을 정도인바, 이는 외교관계에 대해서는 당해 외교당사자가 아닌 한 공개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사법적 판단보다는 국익에 관한 판단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 및 국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일본의 비공개요청 및 그에 따른 정보비공개의 필요성

- (1) 원고들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정보들은 모두 한일수교 이전에

法律事務所 太平 碑

Bae, Kim & Lee

진행되었던 한일회담과 관련된 것인바, 한일회담의 회의록,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기록한 문서, 회담에 참가한 대표단과 우리 정부 사이의 교신, 훈령, 전의서, 입안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들은 우리 외교 당국자들이 일본의 당국자들과 사이에 양 국가를 대표하여 협상한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므로, 결국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외교관계"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 (2) 그런데 위 정보들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외교경로들 통하여 공개를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국가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외교관례이고 관행입니다. 아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외교관례와 관행을 근거로 외국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있는바, 그러한 우리나라가 다른 정부의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외교관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앞으로는 다른 나라에 대하여 그와 같은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가) 사례 1.

미국 국무부는 1981년 미국 외교사의 개관적인 사료를 정리할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와 사이의 외교관계에 관한 자료집을 편찬하였는바, 이 때 미국 국무부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련 외교기밀문서(1957. 11.

法律法人 太平洋

Bae, Kim & Lee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으로서 우리나라의 중대한 이익이 담긴 비밀문서 중 일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공개될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중대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을 이익은 전혀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인용된다면, 원고들의 개인적인 "한풀이"를 위하여 국민 전체가 손해를 입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 (4) 따라서 이와 같은 외교관행과 관례 및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우리나라의 국익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고, 본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가 "외교관계"를 비공개사유의 하나로 명시하면서 예상하였던 바로 그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피고의 입증방법

가. 우리 외교통상부 또는 일본국 외교실무자에 대한 증인신청

현재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및 위 정보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반드시 비공개되어야 할 중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위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 외교통상부 또는 일본 외교당국의 실무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나. 비공개검증신청

부지.

별지 공개요청 목록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과 제	문서번호	결공번호
1 외무부	1952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록(1-5차)	88-74	88-1221
2	"	제1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의 회의록(1-8차)	88-75	"
3	"	제1차 청구권 위원회 회의록(1-8차)	88-79	
4	1950-52	제1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사료	88-80	"
5	1953	제2차 한일회담 본회의록(1-3차)	88-82	"
6	"	제2차 한일회담 기본관계 회의록(1-2차)	88-84	"
7	"	제2차 한일회담 청구위원회의 회의록(1-3차)	88-87	"
8	1953	제3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및 결렬경위 (1-3차)	88-86	"
9	"	제3차 한일회담 기본관계회의록(1차)	88-90	"
10	"	제3차 청구권위원회의 회의록(1-2차)	88-92	"
11	1956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88-93	"
12	1957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88-94	"
13	1958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88-95	"
14	"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 위원회 회의록(1-3차)	88-98	"
15	"	제4차 청구위원회의 관계자료	88-99	"
16	1958-60	제4차 한일회담 교섭 및 훈령	88-101	"
17	"	제4차 한일회담 대표단 입면 문제	88-102	88-1225
18	1960	제4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1-15차)	88-103	"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과 제	문서번호	필름번호	
19	외무부	1960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재일한인 재산 반입 문제	88-114	88-1227
20		1960-61	제5차 한일회담 대표단 임명	88-115	88-1227
21		"	제5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및 사전교섭 비공식회담보고	88-116	"
22		"	제5차 한일회담 일반청구권 소위원회의 회의록(1-13차)	88-121	"
23		1961	제5차 한일회담 미일평화조약 제4조(청구권)의 해석에 관한 미국당성 각서 공개	88-122	"
24		1960-61	제5차 한일회담 일반문제	88-123	"
25		1961	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88-124	88-1229
26		"	"	88-1226	"
27		1961-62	제6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및 종합보고	88-126	"
28		1962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회의(통정)	88-130	88-1230
29		"	"	88-131	"
30		"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위원회 이후의 교섭	88-132	"
31		1961-62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위원회 회의록(1-11차)	88-133	"
32		1962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의 대비 석 증(新政) 한일회담 회의록 합의 미합의점	88-134	88-1231
33		1959-62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일본의 대미 GARCOA, ERCA 제부변제	88-135	"
34		1963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의(통정)	88-139	"
35		"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 석증 청구권 관계회의	88-140	"
36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88-141	"
37		1961-64	제6차 한일회담 대표단 임명관계	88-142	88-1232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과제	문서번호	필름번호
38	"	제6차 한일회담:제2차 정치회담 예비 식중 본회의(1-65차)	88-149	"
39	"	"	88-150	"
40	"	"	88-151	88-1234
41	"	"	88-152	"
42	"	"	88-153	"
43	1961-64	제6차 한일회담:청구권 관계자료	88-154	"
44	1963-64	제6차 한일회담:각료회의 및 회담관계 문제점 연구	88-155	88-1235
45	"	제6차 한일회담(속개):본회의를 위한 예비회담 및 본회의	88-156	"
46	"	제6차 한일회담:본회의 수석대표간 비공식 회의(1-21차)	88-157	"
47	"	제6차 한일회담:기본관계위원회	88-158	"
48	"	속개 6차 한일회담:청구권 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 문제	88-162	88-1236
49	1963-64	속개 6차 한일회담:현안문제에 관한 한국측 최종입장	88-163	"
50	1964-65	제7차 한일회담:대표단 임명관계	88-164	"
51	"	제7차 한일회담:본회의 및 수석대표회담	88-165	"
52	"	제7차 한일회담: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88-166	"
53	"	제7차 한일회담:법적지위위원회회의록 및 훈령	88-167	"
54	"	"	88-168	"
55	"	제7차 한일회담:청구권 관계회의 및 훈령	88-175	"
56	"	"	88-176	"
57	"	제7차 한일회담: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내용 설명 및 자료	88-17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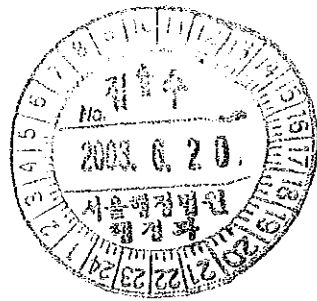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 339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03. 6. 20.
1/6

준비서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 339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천수 외 99인
피 고 외교통상부장관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공개청구의 이익에 대한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일제강점하의 피해자들의 대표자로서 가해자인 일본국이나 일본기업을 상대로 노동에 따른 임금 지불과 강제연행 및 이에 이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중이거나 제기하려는 사람이므로 공개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장에 첨부된 원고들 명단에 나타난 인적사항 등을 보면 원고들이 일제 강점하의 피해자들이거나 그 자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의 명단만으로 원고들이 일제 강점하의 피해자들이거나 그 자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일본기업에 근무한 사실, 강제 연행된 사실 등을 입증할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일제 강점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파 2003. 5. 6.자 준비서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개청구의 이익, 즉 '일제 강점기 피해자로서의 피해 보상의 실현'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원고들의 일제 강점기 피해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결국 공개청구의 이익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일본 정보공개법을 원용한 피고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론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일본의 정보공개법 중 우리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와 유사한 조항을 원용하여 외교문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근거로 제시한 점에 대하여, 그 배경이 되는 사실에 대한 오인과 일제강점하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전쟁책임을 방기하려는 일본측의 의도를 한국 정부가 그대로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알권리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한 선진 각국의 정보공개법에서도 행정문서의 정보공개에 대한 예외로서 특히 외교,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모두 비공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중 우리 법제와 유사한 형태의 입법을 한 일본의 정보공개법 관련 조항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는 단지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외교상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정보를 비공개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행정부의 자유 재량에 맡겨 놓고 있으나, 일본의 정보공개법은 외교상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판단 기준으로 “다른 국가 혹은 국제기관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될 염려 또는 다른 국가 혹은 국제기관과의 교섭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우리나라보다 상세히 판단기준을 규정하였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도 타당하므로 이를 원용한 것입니다.

피고로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본에서 본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일본 정보공개법을 원용한 것이 아니며, 본건 정보가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일방적이지 않으며 외국 입법의 해석론에 비추어도 타당하다는 근거를 밝히기 위하여 원용한 것뿐입니다.

2003년 6월20일

피고 소송수행자

외교통상부 외무관 이상렬

외무관 신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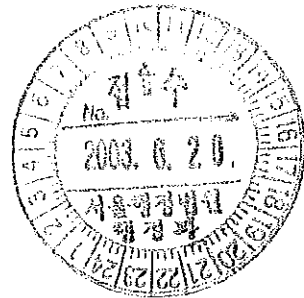


준비서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 339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천수 외 99인
 피 고 외교통상부장관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공개청구의 이익에 대한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일제강점하의 피해자들의 대표자로서 가해자인 일본국이나 일본기업을 상대로 노동에 따른 임금 지불과 강제연행 및 이에 이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중이거나 제기하려는 사람이므로 공개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장에 첨부된 원고들 명단에 나타난 인적사항 등을 보면 원고들이 일제 강점하의 피해자들이거나 그 자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의 명단만으로 원고들이 일제 강점하의 피해자들이거나 그 자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일본기업에 근무한 사실, 강제 연행된 사실 등을 입증할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일제 강점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과 2003. 5. 6.자 준비서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개청구의 이익, 즉 '일제 강점기 피해자로서의 피해 보상의 실현'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원고들의 일제 강점기 피해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결국 공개청구의 이익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일본 정보공개법을 원용한 피고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론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일본의 정보공개법 중 우리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와 유사한 조항을 원용하여 외교문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근거로 제시한 점에 대하여, 그 배경이 되는 사실에 대한 오인과 일제강점하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전쟁책임을 방기하려는 일본측의 의도를 한국 정부가 그대로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알권리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한 선진 각국의 정보공개법에서도 행정문서의 정보공개에 대한 예외로서 특히 외교,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모두 비공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중 우리 법제와 유사한 형태의 입법을 한 일본의 정보공개법 관련 조항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3.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일부 원고들 주장의 부당성

본건의 원고들 가운데에는 우리나라가 현재 그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해주는 “군 위안부 피해자 및 원폭피해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현재 일제 강점기시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 있는 위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정보공개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동건 정보 청구 원인이 개별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 정부는 1975년부터 1977년간 당시 재무부 주관하에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내보상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외에도 군 위안부 피해자 및 원폭 피해자들에게는 별도의 보상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는 군대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물질적 배상은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일본측에 요구하지 않고 우리 정부차원에서 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1993. 6.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생활안정지원법”(을 제9호, 이후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제정하여 현재 등록된 국내외 거주 군대위안부피해자 133명에게 여성부 주관 하에 일시금 4,3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생활비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의 경우 임대주택 우선 입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폭피해자들의 경우, 원폭피해자복지기금관리지침(을 제10호)에 근거하여 일본정부로부터의 지원금 및 우리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병원 진료비 지원, 장제비 지원, 건강진단비 지원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합천의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의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 위안부 및 원폭피해자들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경우, 원고가 2003.6.19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실시한 “원고들의 재산권에 대해 우리 정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특히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대일 청구권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에 반하는 주장을 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반론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한편 개인의 대일청구권과 관련하여 개인이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피고의 기존 입장을 근거로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이 기존의 입장과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주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개인의 청구권과 관련, 개인이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청구권을 행사하는 원인이 되는 실체적 권리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가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 할 것이며 피고도 위 권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는 한·일 양국의 정부차원에서 대일 청구권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는 입장에 기초하여, 보상대상인 대일 청구권의 내용과 보상 범위, 국내 보상 내용 등은 모두 한일청구권 협정 및 그 협정의 합의의사록 (I), 대일청구 요강, 국내 대일청구권 보상 법률 등을 통하여 모두 상세히 알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국내적으로 보상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이 보상을 목적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과정의 문서들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공개 이익이 없는 부당한 주장이라는 점을 실시한 것일 뿐, 동건 관련 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보상의 충분, 불충분 여부는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결정해야만 할 문제이며 보상 절차 과정에서 누락된 원고들의 경우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입법 등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그 내용과 범위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대일청구권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일 청구권 협상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5. 결론

원고들이 알고자 하는 개인의 대일청구권 처리 결과는 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있어야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북·일 수교타결시까지 한시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보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정보공개청구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비공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증거자료

1. 을 제7호 대일청구 8개 요강
1. 을 제8호 청구권 관련 국내 보상내역
1. 을 제9호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916호)
1. 을 제10호 원폭피해자복지기금관리지침

2003년 9월 5일

피고 소송수행자

외교통상부 외무관 이상렬

외무관 신희선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전제사실과 관련

우선 피고는 개인의 청구권과 관련하여 개인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가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 할 것이며 피고도 위 권리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응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본권 제한 불능설).

나. 개인청구권 소멸론과 관련

그런데 피고는 위 논리와 모순되게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정부분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상대적 기본권 제한 가능 및 소멸론)을 전제로 하여,

(1) 먼저 군대 위안부의 경우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체결당시에 군대위안부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물질적 배상은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일본측에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여, 군대위안부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협의 미실시를 이유로 한 제한 소멸론),

(2) 원고들 중 군대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들의 경우 우리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고 있으므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청구권소멸과 무관하게 이 사건 정보 공개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대체보상에 의한 제한소멸론).

(3) 그런데 한편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은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의 재산, 권리,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이 범위는 위 협정과 같이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 합의의사록(1)에서 한층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위 합의의사록 2조의 (g)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고 규정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일청구권은 한일양국의 합의 하에 해결된 대일청구권과 기본적인 성격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여 앞선 입장과 다른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절대적 기본권 제한 가능 및 소멸론).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을 당시 구체적 정황이 밝혀지지 않아서 오는 혼동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 주장자체의 혼동을 보더라도 본건 문서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피고주장의 문제점

가. 절대적 기본권 제한 가능 및 소멸론과 관련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일청구권이 한일양국에 의해 해결된 대일청구권과 기본적인 성격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점(절대적 기본권제한 가능 및 소멸론)에 대한 피고주장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이 이론은 국민이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때나 가능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 기본권 제한 가능 및 소멸론은 우리 헌법질서에서 용납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가 있어, 위 협정 및 대일청구권 8개 항목의 문언에 의하면 구체적 논의여부와 관련이 없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은 위 문언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구권협정 체결시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논의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의 예외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피징용 이외의 원폭피해자인 원고들의 경우나 기망에 의해 동원된 근로정신대 원고들, 귀환과정에서 생긴 피해자인 원고들의 유형별 손해에 대해서도 어떤 협상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바, 이 점에서도 오히려 문서의 공개는 반드시 필요한 형편입니다.

(2) 한편 상대적 소멸론의 또 다른 입장은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정부와 정부간에 맺은 협정과 이에 따른 후속 국내입법조치에 의해 개인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간의 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권리도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재산권보장과 제한에 대한 우리 헌법 제23조에 가장 근접하는 이론으로 보이나, 이러한 이론을 취하는 경우에도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아니합니다.

우선 법리적으로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가해자인 채무자측에 의해 채무지불 성격의 금원이 제공되고, 이를 기초로 피고가 국내 입법을 통하여 보상과 동시에 권리소멸에 대한 국내입법을 완료하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채무자인 일본정부 및 일본기업은 일제강점 하 원고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일체의 채무지불성격의 금원을 제공한 바도 없고(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들은 채무지불의 의무가 있다고조차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상을 한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 원고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후속 국내 입법조치에 있어 신고의 대상으로조차 되지 않았고 따라서 전혀 보상을 받은 바가 없는 바, 이 점에 대해서는 항을 달리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일 민간청구권 관련 법률의 문제점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한일청구권협정체결과 그 이후 대일 민간청구권관련 입법에 의해 일본국을 대신하여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종료한 것인 양 주장을 하면서 (2003.5.14.자 피고의 준비서면 결론부분),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정보공개청구라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듯 명백히 부당합니다.

나. 일본국 정부의 태도 및 입법배경과 관련

(1) 일본국은 그 동안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원고들과 같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해결하기 위해 한푼의 돈도 지급을 한 적이 없고, 오로지 경제협력자금으로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의 금전을 공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일한조약과 국내법의 해설>이란 일본정부의 발행책자에도 명확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청구권문제와 경제협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경제협력의 증진과 청구권문제의 해결은 동일한 협정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경제에 관한 것이고 또한 전술한 교섭의 경위로부터 관련된 것에 지나지 않고 양자간에 어떠한 법률적 상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공여는 한국의 대일청구에 대한 채무지불의 성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배상과 동일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註) 예를 들면 8월 5일 한국국회 일한 특별위원회에서 장 경제기획장관의 발언---청구권은 ,확실히 청구권이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협정 전문에는 청구권문제의 해결을 주로하고 부수적으로 경제협력이 규정되어 있다. 또 무상 3억달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배상적 성격이다.] 이와 같은 한국측의 국내법적인 설명은 청구권문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일한 회담에 있어서 최대의 교섭조건으로서 상시 주목되어 왔고, 특히 한국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30여년간에 걸친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의를 관련 지우려 해 왔다는 점을 보면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내적 정치고려는 별개로써 명문화된 협정의 내용으로부터 말하면 제1조에 규정한 규정하는 5억 달러의 자금공여는 한국측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대일 청구에 대한 ‘채무지불’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인 바, 협정의 전문 제2단 및 제1조1의 후단의 규정에 의해도 명백한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으로서 행하여 졌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국이 한국정부에 제공한 자금은 채무지불의 성격이 아니라 경제협력으로서 행하여 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위 해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정부(피고)가 일본국으로부터 받은 경제협력자금을 마치 원고들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받은 일본국으로부터 채무지불의 성격을 가진 금원인 양 주장을 하고, 위 금원으로 대일민간청구권 관련 입법을 한 것은 순전히 채무지불의 성격을 가진 한푼의 돈도 일본정부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채 외교보호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굴욕적 한일협정을 맺었다는 과오를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의 일부일 따름입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따라서 당연히 위 대일민간청구권관련 3법에는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근본적 시각은 전혀 있을 수가 없었고, 외교보호권의 포기에 대한 국민여론은 무마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후속조치만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조차 원고들에 대한 채무지불의 성격을 가진 금원은 지급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 시인을 하고 있는데도 피고가 마치 일본국을 대신하여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종료한 것인 양 주장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에서도 본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진상을 밝힐 필요성이 엄연하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2) 또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된 것은 외교보호권 만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국의 해설에서도 명확합니다.

즉, “위 일한조약과 국내법의 해설 중 헌법상의 보상문제부분에 대해 조약은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이지만 조약에 의해 어느 국가가 그 나라 자체 뿐만이 아니라, 그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국민의 처분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번의 경우 일본국은 한편 협정 제2조의 3 규정에 의해 일본국민의 재산등에 대한 조치 및 일본국민의 모든 청구권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되면 이러한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국가로서 일본국 헌법 제29조와 관련하여 국내보상의 의무를 정부가 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다른 한편 일본국에 있는 한국민의 재산권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헌법상의 보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보상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협정 제2조의3의 규정의 의미는 일본국민의 재한 재산에 대해 한국이 취하는 조치 또는 일본국민의 대한청구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제법상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외교보호권이란 국제법상 국제법상의 주체인 국가에게 인정되는 고유의 권리이며 극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그 행사, 불행

사가 결정되어 지는 것이고, 국가가 그 판단의 결과에 대해 자국민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과의 문제에서 전기 제2조의3에 의해 한국이 취하는 조치의 대상이 되는 일본국민의 사유재산권이 그 조치의 결과 소멸하게 되었을 때는 그 재산권의 소멸은 위 협정에 의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 정부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고(규정의 직접적 효과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가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사게 하는 것이 된다), 이는 환언하자면 그 재산권의 처리는 일본국의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본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29조3항의 문제로 는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국민에 대해 정책상의 배려로써 구제 조치를 어떻게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외교보호권을 포기함으로써 권리실현에 현저한 장애를 보게 되는 국민에 대해 정책상의 배려로 이루어진 것이 대일민간청구권관련 법률입니다.

(3) 이와 같은 경위로 인해 일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제협력자금은 그 받은 성격에 부합하게 경제성장을 위해 사용되었고, 원고들과 같은 일제강점하 피해자들에 보상을 위해 일본국이 지불한 것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피고)에게는 일본국을 대신하여 일제 피해자들에게 대신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이었고, 단지 피고가 외교보호권을 포기함에 따라 일제 강점하 피해자들의 권리주장이 현저히 곤란해 질 것에 대한 정책상의 배려로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소위 <대일민간청구권관련 3법률>이었으나, 이러한 입법적 배경 때문에 위 관련 법률은 실제 내용도 일제강점하 피해자들의 보상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 대일민간청구권 관련법률의 문제점

(1) 한국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유입되는 자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2.19. 법률 제1741호,이하 청구권자금법),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1971.1.19. 법률 제2287호,이하 청구권신고법),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1974.12.21. 법률 제2685호,이하 청구권보상법)등 3개의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권자금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동조 2항은 “전항의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기준,종류, 한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지불성격의 금원이 아니었다는데서 오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문제점만 보더라도 아래와 같습니다.

(2) 먼저 청구권신고법 제2조 <신고대상의 범위>에 대해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의 피해에 관해 동조 1항 9호에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 만을 신고대상으로 삼아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으로부터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따라서 피징용 징병 부상자, 강제위안부, 원폭피해자, 강제노동피해자들은 보상은커녕 신고조차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나마 신고대상으로 인정한 피징용 사망자의 경우에도, 1) 보상청구권자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부모,조부모 등 직계가족으로만 한정하여 그 외 우리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는 형제,자매나 삼촌등을 제외하였다는 점, 2) 당시는 물론 지금도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는 유족들이 허다한데 신고기간도 10개월에 한정하여 실제로 보상청구권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 3)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로 한정하여 귀환과정이나 그 이후에 사망한 자를 모두 제외하였다는 점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과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으로 피징용 사망자에 대해서 그 유족에 한해 금30만원씩 지급하였을 따름입니다.

위와 같이 지극히 불합리한 <대일민간청구권관련 법률>의 제정과 실시에 의해 원고들의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가해자인 일본정부 및 기업의 가해행위에 못지 않는 또 다른 가해행위에 따름 아 납니다.

(3) 한편 일본군 강제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으므로 일부 원고들의 경우 정보공개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본군 강제위안부의 경우 피고주장과 같은 국내입법에 의해 생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귀 생활지원은 일본군 강제위안부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가해자인 일본국이나 일본 기업을 대신하여 보상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원폭 피해자의 경우에도 우리 적십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원은 원폭 피해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이루어 낸 성과이며, 인도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지 피고가 일본정부를 갈음하여 한 보상적 조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일민간청구권관련 3법의 제정과 시행에 의해 피고가 채무자인 일본정부나 일본 기업에 갈음하여 대위 변제한 것이 되어 원고들의 채권이 소멸된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당시의 경위에 전혀 반하는 것으로 생각되고(이 부분 정보공개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중의 하나입니다), 채무지불의 성격의 금원을 일체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에도 모순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가사 채무지불 성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청구권신고법 및 보상법의 흠결과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도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질서상 용납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공 증 인 기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5.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피고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것 자체가 본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해 초래되는 혼동현상으로 보이는 바, 따라서 본건 정보는 시급히 공개되어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에 충족함은 물론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막는 더 이상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아닐 것입니다.

2003. 10. 1.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국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귀중